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5 - 338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기간제 직업상담원 채용 접수기간 연장 공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실업급여 업무 지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고용노동행정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5. 12. 17.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 본 채용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채용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채용 분야별 주요 직무수행 내용과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은 본문에 포함된 직무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고용형태	채용분야	담당업무	채용인원		채용 예정지
			일반 전형	장애인 전형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직업상담원	실업급여 업무 지원	6명	1명	인천고용센터

2 원서접수

응시단위(채용관서)	접수처(e-mail)	전화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mooho5469@korea.kr	☎ 032-460-4511

※ **전자우편으로만 접수 가능(우편, 방문 접수 불가)하며, 제목은 반드시 "[기간제근로자 채용지원(실업급여 업무 지원) - 성명]" 기재 (예: [기간제근로자 채용지원(실업급여 업무 지원) - 홍길동]**

3 응시자격 등

구 분	주 요 내 용
자격	· 제한 없음
학력·전공	· 무관
성별, 연령	· 제한 없음
기타	· 채용 즉시 근무 가능 자 · 인사 관련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응시자는 1개의 청.지청에만 응시 가능 (※기타 유의사항 참조)

4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여부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근무희망지역 등을 고려하여 최종선발인원의 3~5배수 내에서 선발

⇩

면접전형

■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

○ 전형일정

전형일정	일 시(예 정)	비 고
서류전형 공고 및 원서접수(병행)	2025. 12. 8.(월) ~ 12. 22.(월)	• 채용담당자 e-메일 접수로만 접수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접수·수신된 지원서만 유효
서류전형	2025. 12. 24.(수) ~ 12. 26.(금)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및 각 지청 홈페이지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5. 12. 26.(금)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공고
면접전형	'25. 12. 29.(월) ~ 12. 30.(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면접 일시 및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25. 12. 31.(수)	• 중부지방고용노동청홈페이지 공고
근로계약	'26. 1. 2.(금)	• 근로계약 체결 및 업무 개시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홈페이지에 공지함
※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예비 합격자를 정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table>
<tr><th>구 분</th><th>우대사항</th></tr>
<tr><td>자격사항
<서류전형></td><td>○ 직업상담사 자격증 보유자</td></tr>
<tr><td>경력사항
<서류전형></td><td>○ 실업급여 및 직업상담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td></tr>
<tr><td>가점부여
<서류 및 면접전형></td><td>
<table>
<tr><th>가점항목</th><th>가점 부여 내용</th></tr>
<tr><td>법정가점
(법률상 취업지원 대상자)</td><td>○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원자에게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10%(10점) 또는 5%(5점) 부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4조</td></tr>
<tr><td>사회형평
가점</td><td>○ 「고용노동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지침」에 따라 해당 지원자에게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3점) 부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td></tr>
</table>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
(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사회형평 가점 포함시)를 초과할 수 없음
○ 최종합격자 결정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가 있는 경우 다음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함
① 법정 가점을 받은 취업지원 대상자, ② 사회형평 가점을 받은 자, ③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 준고령자 순, ④ 서류 및 면접전형 합산점수가 높은 자</td></tr>
</table>

*** 우대사항 적용은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6 접수서류

○ 원서접수 시 아래양식에 따라 작성 후(**서명 필수**) 스캔본을 채용담당자 전자우편 송부

<table>
<tr><th>제출 서류</th><th>제출 시기</th></tr>
<tr><td>○ NCS기반 입사지원서,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 동의서 각 1부
→ 고용24 접속 후 'e-채용마당'에 입력 or 위 채용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
※ 붙임 서식 활용</td><td>원서접수 시</td></tr>
<tr><td>○ 자격증 사본, 직무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td><td rowspan="4">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당일 제출
※ 원서접수 시 기재한 내용을 증빙자료로써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자격, 경력, 우대사항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허위사실 기재가 있는 경우 본 채용에서 탈락 처리됨을 유의</td></tr>
<tr><td>○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 * 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td></tr>
<tr><td>○ 가점부여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table>
<tr><th>구분</th><th>가점부여 대상자</th><th>제출 증명서류 예시</th></tr>
<tr><td>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td><td>Ⅳ. 우대사항 중 법정가점(법률상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자</td><td>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국가보훈부 발급)</td></tr>
<tr><td rowspan="5">사회형평 가점 부여 대상자</td><td>「장애인복지법」 제2조 해당자</td><td>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td></tr>
<tr><td>「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계속 해당기간 2년 이상자</td><td>수급자 증명서</td></tr>
<tr><td>「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해당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자</td><td>한부모가족증명서</td></tr>
<tr><td>「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td><td>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td></tr>
<tr><td>「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해당자</td><td>결혼이민, 귀화 등 확인자료</td></tr>
</table></td></tr>
<tr><td>○ 공정채용확인서 1부</td></tr>
</table>

※ 경력증명서는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7 근무조건

○ 채용예정일: '26.1.2.(금)

○ 근무기간: '26.1.2.(금)~4.1.(수) <3개월>

○ 보수수준: 직업상담원(전임) 1호봉 수준 적용

* 기본급 외 급식비(월 14만원), 가족수당(해당자), 명절상여금(설), 법정수당 지급

* 4대 보험 가입(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휴게 1시간)

○ 근무 장소: 인천고용센터

◦ 주요 업무: 실업급여 업무 지원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름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1개의 기관(청 또는 지청)에만 응시 가능합니다.(2개 기관에 중복하여 접수할 경우 0점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기한 내 채용서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등을 반환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채용서류는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채용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 또는 폐기(파기)합니다.

○ 응시원서 및 이력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허위 기재·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초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 있고, 합격자의 채용 포기, 결격사유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에 따른 예비합격자의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사 및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지원자가 서류전형 합격인원 대비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접수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채용 후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청내 소속기간 간, 지청 내 부서간 전보를 할 수 있습니다.

○ 채용 후 직무와 관련된 영리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됩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등은 채용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합니다.

○ 임용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032-460-4511)

【첨부 1】 입사지원서

지원분야	기간제 직업상담원 (실업급여 업무지원)	응시단위	인천고용센터
장애인 제한경쟁	□ 해당(시각장애 여부: □해당, □미해당) □ 미해당		

1. 인적 사항

* 인적 사항은 필수 항목으로 반드시 모든 항목을 기입해 주십시오.

성 명	(한글)	접수번호	
현 주 소			
연 락 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생일	

* 생일: 면접전형 시 본인 확인을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 생년월일 중 생년을 제외하고 기재
(예: 880505인 경우 0505 기재)

취업보호·지원 대상여부	□ 대상(10%) □ 대상(5%) □ 비대상	사회형평 가점 대상여부	□ 대상(3%) □ 비대상 * 대상인 경우 아래 해당항목에 체크
취업우선고용직종 대상여부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 대상 (□ 만 50세 이상, □ 만 55세 이상) □ 비대상	사회평평 가점 대상 분야	□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2년 이상)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2년 이상)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자격증 (해당시 체크)	□ 직업상담사 1급 □ 직업상담사 2급		

2. 교육 사항

(1) 학교 교육

* 직무 관련 학교교육 과목을 이수한 사항에 대해 아래 항목에 맞게 기재해 주십시오.
(직무설명자료 참고,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

○ 학교 교육은 제도화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고등교육과정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지시에 따라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해주십시오.

과 목 명	주 요 내 용	교육시간
직업심리학	*직업상담 이론 및, 수행에 필요한 기초 지식 습득*	*16시간*

(2) 직업교육(직무관련 교육훈련)

* 직무 관련 직업교육 과목을 이수한 사항에 대해 아래 항목에 맞게 기재해 주십시오.
(직무설명자료 참고,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

○ 직업교육은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실업교육, 기능교육, 직업훈련 등을 이수한 교육과정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지시에 따라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해 주십시오(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

과 정 명	주 요 내 용	교육이수 목적	교육기관	교육시간
구직자 상담	*구직자 상담*	*자격증취득 외*	*00교육원*	*96*
MBTI 보수과정	*MBTI 보수과정*	*자격증 취득*	*00연구소*	*24*

3. 직무관련 경력 및 경험사항

* 지원분야(직업상담) 직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 및 경력사항에 대해 아래 항목에 맞게 기재해 주십시오. (직무설명자료 참고,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
 * 직업상담 관련분야의 경력이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상담과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1.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및 직업안정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2.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소
 3.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시설
 6.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

○ 경력은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기간 동안 일했던 이력을 의미하고 직무관련 경험은 직업 외적인(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 활동, 연구회 활동, 동아리/동호회 활동,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재능기부/봉사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지시에 따라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해 주십시오.

구분	근무·활동기간	기관명	직위/역할	담당업무
■경력 □경험	*2000.00.00~2000.00.00*	*00센터*	*00상담원*	*취업알선, 직업상담*
□경력 □경험				

○ 그 외 모든 경험 및 경력사항은 아래에 기재해 주십시오.

구분	근무·활동기간	기관명	직위/역할	담당업무
□경력 ■경험	*2000.00.00~2000.00.00*	*00대학교 취업동아리*	*회장*	*동아리 운영총괄* *취업스터디운영*
□경력 □경험				

4. 직무관련 자격 사항

* 해당 자격증을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 직무관련 필수 자격증(응시 자격요건)은 직업상담사 2급 이상이고, 우대 자격증은 직업상담사(1급), 사회복지사(1급, 2급),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종류이며, 이 외 자격증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자격증명	발급기관	발급번호	취득일자
직업상담사 1급	*한국산업인력공단*	*0-000000*	*2019.00.00*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 입사지원서에 기술한 '3. 직무관련 경력 및 경험사항'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으로 본인이 수행한 활동 조직, 역할 및 구체적 활동 내용, 주요 결과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 소 개 서

1. 그동안의 경험에서 정보에 대해 객관적인 사고와 통합적인 분석을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다면 당시 상황과 본인의 역할, 행동,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자 내외)

2. 지금까지의 경험 중 갈등이나 문제해결 과정에서 의사소통 역량을 발휘하여 상황을 개선한 사례에 대해서 당시 상황과 본인의 역할, 행동,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자 내외)

3. 지금까지의 경험 중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이 있으시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자 내외)

4. 지금까지의 경험 중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노력했던 경험이 있으시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노력했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자 내외)

5. 지원분야(직업상담) 직무와 관련하여 지원자의 장점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자 내외)

위와 같이 응시원서를 제출하오며 일체 허위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응 시 자 : (서명)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

【첨부 2】 NCS 기반 채용 직무설명자료

<table>
<tr><td rowspan="5">채용분야</td><td rowspan="5">직업상담원
(기간제)</td><td rowspan="5">분류
체계</td><td>대분류</td><td colspan="2">07. 사회복지·종교</td></tr>
<tr><td>중분류</td><td colspan="2">02. 상담</td></tr>
<tr><td>소분류</td><td colspan="2">01. 직업상담서비스</td></tr>
<tr><td>세분류</td><td>01. 직업상담</td><td>02. 취업알선</td></tr>
<tr><td></td><td></td></tr>
<tr><td>기관
주요사업</td><td colspan="5">지방고용노동지청은 관할 지역의 사업장 및 지역 주민을 위해 고용노동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임</td></tr>
<tr><td>주요업무</td><td colspan="5">○ 구인구직상담 및 알선 ○ 취업지도프로그램 운영
○ 직업정보관리 ○ 고용서비스 지원</td></tr>
<tr><td>주요업무
수행내용</td><td colspan="5">○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 구직자 구직욕구 및 취업역량을 분석, 구직활동 지원과 사후관리를 위한 점검
· 구인업체 정보수집과 구인정보 구축을 위한 정보관리 및 맞춤 알선을 위한 잡서칭과 매칭 업무수행
· 지원제도 등 구직자 특성에 부합한 안내 및 상담업무 수행
○ (취업지도프로그램 운영)
· 취업지원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내담자의 직업심리검사를 위한 검사도구 선택 및 실시
· 직업심리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 및 결과에 대한 내담자와의 상담업무 수행
· 직업훈련 정보 분석을 통한 직업훈련 맞춤 정보제공
○ (직업정보관리)
· 수집된 각종 직업정보의 분석과 내담자 특성별 정보 가공 및 제공
· 가공된 직업정보 축적을 위한 업무수행
○ (고용서비스 지원)
· 고용센터의 고용관련 사업 지원
· 고용보험 관련 수급자격 확인 및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등</td></tr>
<tr><td>전형방법</td><td colspan="5">○ 서류전형 → 면접전형</td></tr>
<tr><td rowspan="2">일반요건</td><td colspan="2">나이</td><td colspan="3">공고문 참조</td></tr>
<tr><td colspan="2">성별</td><td colspan="3">무관</td></tr>
<tr><td>교육요건</td><td colspan="2">학력</td><td colspan="3">무관</td></tr>
</table>

	전공	무관
필요지식	○ **(구인·구직 일반상담 및 매칭 관리)** · 임금구조이론 · 취업상담론 · 자격체계에 관한 이론 · 지역 노동시장의 고용동향 및 시장분석 · 고용 및 직업상담서비스 관련 법률 · 산업분류체계 및 산업동향 · 직종별 구인구직정보 시스템 · 직업훈련에 관한 정보 · 고용정보 수집방법 및 동향에 대한 이해 · 해당직무 및 자격에 대한 이해, 채용기업 패턴 분석 ○ **(직업심리검사)** · 직업심리검사도구 종류와 도구별 해석에 대한 지식 · 대상별 내담자 특성 · 신뢰감(Rapport) 형성이론 · 초기면담이론 · 의사결정론 · 직업심리이론 ○ **(직업정보관리)** · 직무분석 · 직업정보론 · 노동시장론 · 임금 및 근로조건 · 의사결정론 · 직업정보 관계법 · 직업 심리학 · 직업상담심리학 ○ **(직업훈련 상담)** ·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현황 ·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 국가기술자격, 전문자격 실시현황 및 과정별 특징	
필요기술	○ **(구인·구직 일반상담 및 매칭 관리)** · 내담자 구직요구도 분석능력 · 취업상담능력 · 고용관련법률 해석능력 · 다양한 구익구직정보 발굴 및 분석능력 · 구인구직정보 정보수집 능력 · 직업심리검사 활용 능력 · 상담실관리지침 활용능력 · 취업포탈 정보사이트 활용능력 ○ **(직업심리검사)** · 직업심리검사도구 실시능력 · 직업심리검사 해석능력 · 직업심리검사결과 판정능력 · 내담자 검사 시 대응능력 · 적극적 경청기술 · 돌발상황 대처능력 ○ **(직업정보관리)** · 직무분석기법 · 매체별 특성에 따른 직업정보 확인 및 가공능력 · 의사결정기법 · 직업정보 축적 및 분석 · 직업정보 가공·제공 및 관리 능력 · 노동시장 주요 통계 해석법 ○ **(직업훈련 상담)** ·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보검색 및 분석능력	

	· 국가기술자격·전문자격 검색 및 분석능력 · 구직자의 훈련과정 결정에 대한 조력 능력
직무수행 태도	○ **(구인·구직 일반상담 및 매칭 관리)** ·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적 의지 · 취업을 성공시키려는 적극적인 태도 · 객관적이고 통합적인 분석노력 · 변화하는 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자세 · 구직정보서류 및 입력에 대한 세심한 관찰력 · 구직정보 입력의 정확성 ○ **(직업심리검사)** · 가치중립적 태도 · 검사 해석을 위한 주의 깊은 관찰 · 검사자를 편하게 해주는 세심한 배려심 · 객관적으로 검사결과를 해석하는 비판단적 태도 · 내담자를 향한 개방적 태도 ○ **(직업정보관리)** · 편견 없이 정보를 수집하는 태도 · 정보수집에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적에 맞는 정보만을 수집하는 엄격성 · 내담자의 수준별·단계별 특성에 따른 직업정보 가공에 대한 사명감 · 직업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명감 ○ **(직업훈련 상담)** · 구직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 · 구직자 경청 및 공감대 형성
필요자격	채용공고문 참고
우대자격	채용공고문 참고
직업 기초능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개발능력, 정보능력, 문제해결능력, 직업윤리
참고사이트	○ www.ncs.go.kr → NCS 학습모듈 검색 ○ www.moel.go.kr → 고용노동부

【첨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00지방고용노동지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기간제 직업상담원 채용절차 진행을 위해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기간제 직업상담원 채용절차 진행·관리*

* 본인 확인, 학위·경력·자격 등 조회·검증, 전형 결과 통보 등

☐ **수집하는 개인정보 내역(필수사항)**

항 목	수집 · 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생일	지원자 본인 확인, 채용일정 정보제공 등 절차 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후 180일까지 *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 ·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존기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비동의 ☐

☐ **수집하는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 내역(선택사항)**

항 목	수집 · 이용 · 제공 목적	제3자 제공	보유기간
교육 · 경력 · 자격 사항, 취업지원보호(보훈대상) · 사회형평가점대상 · 장애 · (준)고령자 사항	· 서류 · 면접전형 평가 · 제3자 제공: 가점 · 우대사항 확인 · 검증	제공 받는자: 제출한 항목 관련 해당 기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후 180일까지 *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 ·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존기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평가에 불리(경력 미반영 및 가점 · 우대사항 미반영)** 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비동의 ☐

기간제 직업상담원 채용절차 진행을 위한 필수정보와 선택정보 제공 관련 동의 거부권리, 거부시 제한내용 등을 모두 확인하고,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이 동의서를 제출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

【첨부 4】 취업지원 관련 법률

법률	조 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②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국선열의 유족 2. 애국지사와 그 가족 및 유족 3.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조 항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나.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애국지사의 가족 나.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다.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3.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제35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3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취업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1.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3.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법률	조 항
관한 법률	2.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5.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제22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2.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5.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19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1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1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첨부 5】 채용시험 가점규정

규정	조 항
고용노동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지침	제22조(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 처리기준) ① 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채용시험 가점기준(별표 2)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한다. 단,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별표 2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국가유공자법」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 처리기준은 채용계획 수립 시 정한 기준 등에 따른다. ④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 제1항부터 제3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첨부 6】 가점 기준

구분		부가 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4조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또는10%
사회 형평 가점 (필요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사회형평가점 포함시)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 장애인에 대한 가점 적용
ㅇ 일반경쟁채용에 응시한 경우에는 사회형평 가점 부여
ㅇ 장애인제한경쟁채용에 응시한 경우에는 사회형평 가점을 부여하지 않으며, 장애인인 응시자가 다른 가점 항목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점을 부여함

【첨부 7】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귀중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